

무허가·무신고어업보상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

1993. 6. 11

청원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청원자

- 청원 : 서산시 오남동 551-100 임한식
→ 오산동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
- 탄원 : 석남동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수길외 7인

나. 소개의원 : 정진국 의원

다. 접수일자 : '93. 5. 4(청원), '93. 4. 24(탄원)

라. 회부일자 : '93. 5. 13(청원), '93. 5. 14(탄원)

마. 상정일자 : '93. 5. 25

2. 청(탄)원요지

[청원 요지]

- 가.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무허가·무신고 어민들의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 1) '91. 10. 26일자 충청남도지사가 시장과 동장을 경유하여 어민들에게 배부한 지침서의 책임.
 - 2) '92. 2. 15일자 서산시장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공고한 책임.
 - 3) 동장은 개인별 어업 확인서를 심사한 심사관으로서 현대건설측이 오산동 514세대에 대하여 어업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
 - 4) 충청남도지사는 보상 추진위원장으로 지금까지 보상이 어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책임.
 - 5) 정부는 현대측이 '92. 6. 22일까지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책과 현대건설에게 A.B지구 준공검사와 관련, 행정적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 이상의 뜻으로 보상금이 보상될때까지 의회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임.

[탄원 요지]

가. 천수만 A지구 내수면 무허가·무신고 어업권 보상을 위한 투쟁에 시의회에서도 동참해 주기 바람.

나. '93. 6. 22일까지 연안어민의 보상을 해결하기로 한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준공 연장 허가를 반대함.

다. '92. 2. 27 신문공고와 같이 보상을 현대측에서 이행하기 바람.

3. 취지설명 요지

→ 소개의원 취지설명은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93. 5. 13) 설명을 하였기때문에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1) 질문 : 무허가·무신고어업에 대한 사항을 최초로 전달받은 사실은 언제인지?

답변 : 보상지침 시달은 '91. 10. 26자임(부시장 김지태)

2) 질문 : 보상대상자는 총 몇세대인가?

답변 : 석남동 8개부락에 488세대, 오산동 5개부락의 514세대등 1002세대임

(농정계장 김관우)

3) 질문 : 1002세대를 어업자로 인정하는가?

답변 : 석남동 8개 부락에 488세대, 오산동 5개부락의 514세대등 1002세대임

(농정계장 김관우)

4) 질문 : 동장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보상대상자 및 가족수등을 확인한후 그 명단을 마을위원회에 송부하여 5일간 열람토록 한후 누락자등 이의신청을 받아 당해 위원회와 협의, 재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했는지?

답변 : 공동심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행되지 않았습

(농정계장 김관우)

5) 질문 : 보상대상자 확정은 동장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확인한 내역서를 토대로 동 어민대표와 현대건설간에 합의하고 이를 시장이 확인하라고 했는데 했는가?

답변 : 어민대표하고 현대건설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물의가 있을경우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슴(농정계장 김관우)

6) 질문 :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현대측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집행해 나갈것인가?

답변 : 6월 2일 현대하고 오산, 석남동장과 어민대표, 그동 출신의원과 시청회의실에서 대책협의회를 갖을계획임(농정계장 김관우)

7) 질문 : 보상을 신청한 1002세대와 현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181세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답변 : 181세대가 절대적인것은 아니다. 6월 2일 대책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

8) 질문 : 보상신청한 1002세대에 대하여 현대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정이든, 대법원, 국회, 농림수산부에 가서 어떻게 주장하겠는가?

답변 : 1002세대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할것임.

5. 토론요지(토론 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 심사결과 : 의견서 참조(별첨 1)

7. 기 타

1. 석남동, 오산동 어업보상에 관한 조사
→ 조사결과(별첨 2)
2. 농림수산부, 충청남도, 현대건설 방문
→ 방문결과(별첨 3)

청원심사의견서

- 청(탄)원인 : 서산시 오산동 어업보상추진위원회(위원장 임한식)
서산시 석남동 어업보상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길)

- 건 명 : 천수만 A,B지구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에 관한 요구

- 의 견 : 본 민원은 1979. 8. 24일 농림수산부에서 현대건설측에 황금어장인 천수만 연안에 매립면허를 하여줌으로써 어장이 상실됨에 따라 생활터전을 잃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지난 '92. 2. 15일 현대와 서산시장, 군수, 홍성, 태안군수의 공동명의로 공고한 보상계획에 의거 석남. 오산동일대 1,002세대가 신청하였으나 현대가 이를 이행치 않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 민원이 발단되었음.

본 청원처리를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산시장, 충청남도지사, 농림수산부, 국회와 관계일선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조사한바 면허조건 제18항에 의한 (1991. 9. 20일 매립면허 연장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마땅히 면허취소를 요구하여야함.

별첨 2

석남동 어업보상 조사

- 일 시 : '93. 5. 26. 11:00
- 장 소 : 동 장 실
- 참 석 : 특위 위원(3), 농정계장(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
- 흐 름 : 동장인사 및 현황설명 → 질문, 답변 → 조사

○ 보고 사항

- 洞일반현황
- 무면허, 무신고어업보상에 대한 일반현황(기본적인것)

○ 질문답변요지

〈 정 진 국 〉

1. 어업사실 확인여부 : 488세대
→ 사실확인 했다(사무장)
2. 현대 + 동장의 사실확인 여부
→ 공동확인 못했다(동 자체적으로 했다)
3. 어업사실 확인 신청서를 현대에 넘겨준 이유, 근거
→ 확인이 어려우니 서로 1차적으로 심사를 한후 나중에 공동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임.
4. 공동심사를 하자는 촉구요구(여부 공문서)
→ 촉구한 사실은 없음(시장은 했슴)
5. 서류심사후 현대로부터의 결과통보 사항
 - 오산동 : 26세대
 - 석남동 : 전세대(통보 없었슴)
6. 신청한 488세대가 전부 어업을 한자라고 볼수 있는가
→ 동 추진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신청한것이기때문에 그사람들을 믿을 수 밖에 없슴
(법적인 뒷받침이 없슴)

〈 손 연 복 〉

1. 동 단위로 5명씩 위촉장을 주었는가?

→ 주었다.

석남 27245-1330('91. 11. 4) 위촉 (41명)

2. 선정 절차는 이행했는가?

→ 이행 했습.

3. 이의자 있는가?

→ 없었다.

4. 어민대표에게 확인서 이송은 (3호서식)

→ 안되어 있음

5. '91. 12. 10일 이내 게시하여 보상계획안 공고여부

→ 했습.

6. 보상계획을 현대와 협의후 게시(시, 군, 동)

→ 협의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하지 않았습.

7. '91. 12. 31확인한 내역서를 토대로 보상자와 보상액등을 현대건설과 합의에 의하여 최종결정 했는가?

→ 못했습.

8. 지침 또는 법률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했는가(도시생활 근로자 기준)

→ 하지 않았습. 그것은 차후 현대와 합의된후 결정할 사항이다.

9. 김경화를 해촉했는데 다른사람은 없는가?

→ 통장이 해촉되므로써 자동 해촉했습. 다른 사람은 없습.

10. 양대동에 30만원을 주겠다고(82세대 405명)확인서를 요구했는데 동장이 확인을 못 해준 이유

→ 82세대만 인정해주고 406세대는 어민이 아니더라고 하는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해줄수 없습.

오산동 어업보상에 관한 조사

- 일 시 : '93. 5. 26. 14:00
- 장 소 : 오산동장실
- 참 석 : 특위 위원(3), 산업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
- 흐 름 : 위원장 취지설명 → 동장 인사 및 현황설명 → 조사

○ 질문답변요지

〈 손 연 복 〉

1. '91. 11. 10 추진기일내에 추진이 완료되었는가?
→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습.
2.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었나?
→ 덕지천에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는 없었습.
3. 통 위원장이 위촉되어 있는가?
→ '91. 11. 4일자로 구성하여 '91. 11. 13일자로 위촉장 전달
4. 현황에 대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는가?
→ 하였습.
5. 사실확인 신청을 한자는 현대건설측에서 무슨말을 하더라도 어업자로 봐야되지 않는가?
→ 그렇다, 동에서는 모두 어민으로 봐야 한다.
6. 공동확인을 하고자 촉구는 했는가?
→ 공문상은 없었으며 유선상으로 수차 촉구하였습.
7. 정진국 의원도 보상금수령 대상자가 되는가?
→ 된다.
8. 최저생계비를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않은 이유?
→ 즉시 보완하겠습.
9. 현대에서 보상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전세대가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를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인것 같다.

〈 정 진 국 〉

1. 촉구한 사실이 없는데 그 원인과 이유(어업사실 확인에 따른)
→ 근거서류는 없다.
2. 공동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것에 따른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 보고한 사실이 없음.
3. 514세대에 대하여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이들에 대하여 어업을 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 통 위원회에서 확인신청을 했으니까 그들을 믿고 있을 수 밖에 없음.

별첨 3

무허가·무신고어업보상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현대건설, 농림수산부, 충청남도 방문]

[개 요]

- 일 시 : 1993. 6. 8(화) ~ 6. 9(수) [2일간]
- 내 용 : 농림수산부, 충청남도, 현대건설 방문
- 참석위원 : 손연복위원장, 윤찬구위원, 최은우위원, 정진국위원
→ 수행 : 의사계장, 정동남

1. 현대건설 방문결과

가. 일자 : '93. 6. 9(수) 14:00~15:55

나. 장소 : 전무이사실

다. 참석자(현대측)

- 국내영업본부 전무이사 차동열
- 국내영업본부 총무이사 김남중
- 국내영업본부 총무부부장 김철순

라. 내용요약

- 차동열 전무이사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 오늘 방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다보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 손연복 위원장
 - 오늘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귀사를 방문하게 된것은 피해어민들의 보상을 촉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져 동료위원과 함께 방문했으니 성의있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청원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권력의 특혜로 5,000여 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국토를 분할 소유한 가해자 현대건설측이 수산업법에서나 법원판례에서 관행 어업이 보호 되었듯이 원인제공자 피해부담원칙에 따라 피해자인 청원인들에게 응분의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 정진국 위원

- 우선 이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하고 협의가 됐는가?

○ 차동열 전무이사

- 최초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 김남중 총무이사(보충답변)

- 당초(면허당시)에는 무면허·무신고 어업자에 대해 보상 계획이 없었다.

- 집단 민원(청와대, 총리실, 국회청원 등)이 야기된후 정부에서 보상계획을 세운 것임.

- 신청세대는 1,002세대가 맞습.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데 서산시에서는 당사자가 있어 말하기 곤란했다. 의원이 중재를 해 줄것을 요구.

- 회사 차원에서는 신청자 1,002세대 전부에 대하여 보상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

- 당초 ABC 등급을 나눈것은 내부적(보상대상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

○ 손연복 위원장 : 토지로 보상할 계획은 없는가?

○ 현대측 : 토지로 보상할 계획은 없습.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 손연복 위원장 : 현대는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보상을 할것인가?

○ 현대측 :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자로 볼수있는 기준의 판단이 애매하기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증명의 판단이 곤란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 손연복 위원장 : 현대건설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유형자에 대하여 보상대상 부적격 유형 5가지를 보상대상자 선발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아직도 문제가 있는가?

서산시 어민신청자중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등에 피해당자가 있는가?

○ 현대측 : 없습

○ 손연복 위원장 : 신청자의 구비서류에 있어 부적격자가 있는가?

- 현대측 : 없음
- 손연복 위원장 : 84년 이전에 내측면허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자가 있는가?
- 현대측 : 없음
- 손연복 위원장 : 소유 농지가 3,000평이상되어 어민이 아니라고 보는자가 있는가?
- 현대측 : 있음.
- 손연복 위원장 : 있으면 공특법에 의하여 재심사 해야한다고 보는가?
- 현대측 : 그렇다.
- 손연복 위원장 : 어장과의 거리가 2km이상 되어 사실상 어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자가 있는가?
- 현대측 : 있다.
- 손연복 위원장 : 있으면 재심사 해야 한다고 보는가?
- 현대측 : 그렇다.
- 『하나하나 따지자 “당초 약속과는 틀린다. 이러면 협상이 되느냐”고 총무부장 말함』
- 정진국 위원 : 공동심사를 하자고 했는데 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차전무 이사는 심사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슴)
- 김남중 총무이사 : 현대 나름대로 심사를 했다.
- 최은우 의원 : 현대가 아무리 성의있게 심사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어 주민의 청원과 탄원이 있는 사실만 보아도 현대가 무성의하다.
시간만 끌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요점만 얘기해라.
- 차동열 전무이사 : C급판정 받은자와 문제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토록 하겠다.
회사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
- 손연복 위원장 : 피해어민에게 보상이 안됨으로써 야기되는 불상사가 없기 바란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하여 지역위원들이 노력하는 성의만큼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
현대가 등급을 (A,B,C급)일방적으로 분류한것은 관행어업 실어보상을 공특법에 의한 이어비 보상으로 따지면 30억 정도인데 B급운운하는것은 어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 김남중 총무이사 :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 보상을 주겠다고 182세대(905명)에 대하

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분류했다.

- 정진국 위원 : 181세대 2억 8천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된다.
- 최은우 위원 : 주민이 요구한 금액은 보상법에서 산정된 금액보다 반도 안되는 15억원 정도가 아닌가? 그것도 못주는가?
- 김남종 총무이사 : 그렇게 근거없이 주다보면 9,000세대 4만여명에 달하는데 매립 면허 허가당시 없던 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 손연복 위원장 : 서산시것만을 말하겠다. 현대가 주겠다고 통보한 182세대 905명에 관행어업 실어보상법으로 계산하면 15억원정도가 되고 보상신청어민 1002세대 5,587명에 대하여 현대측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B급으로 30만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관행어업 실어보상법의 이어비 보상금액과도 일치되는데 지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에서 정한 보상규정에 의해 청원자 전체주민에게 보상을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2-3일내에 충청남도지사와 현대측 관계자, 시장, 군수등이 참석 타결을 위한 협의가 있을것으로 본다.

그때 해결되기를 바란다.

2. 농림수산부 방문결과

가. 시 간 : 1993. 6. 9. 17:30~18:50

나. 장 소 : 농어촌개발 국장실

다. 참석자 : 손연복, 윤찬구, 최은우 위원.

- 농어촌 개발국장 유근학

- 농지조성 과장

- 농지조성과 사무관

※ 농림수산부장관과 차관은 회의 참석으로 부재중이었습.

라. 내용 요약

○ 손연복 위원장

- 주민청원에 의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방문취지 설명.

○ 농지조성과장

- 농림수산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손연복 위원장

- 면허 조건이행과 보상이 안될 경우 뚝을 터 버려라(면허취소)하면될것 아닌가?
그의 법적 근거로는?

□. 면허신청 및 허가의 특혜 여부

1. 농수산부로 매립면허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A,B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1978. 10. 31. 농수산부에 하였다.
당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규정된 면허권자는 농수산부가 아닌 건설부장관이었다.

① 건설부가 아닌 농수산부에 면허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농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78. 9. 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9항에 의거하여 농수산목적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건설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했
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가?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 권한위임 조항에도 서울 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
만 있고, 농림수산부장관은 없다)

③ 공유수면 매립법 법률로 정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조항없이 하위법인 행정규정에
의해 완전 무시할 수 있는가?

2. 농수산부에서 면허를 발급한 것은 위법이며, 현대에 대한 특혜이다.

- 78. 10. 31. 농수산부에 면허신청

- 78. 12. 18.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
행규정 제정.

- 79. 1. 10. 농수산부 고시(제3041호)

- 79. 6. 4. 경제장관 회의에서 사산 A,B지구 간척사업 면허 승인의결.

- 79. 8. 24. 면허 발급(농수산부)

①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이 농수산부에서 고시
되기 적어도 70일전에 현대는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면허 신청을 한 것 아닌가?

② 동 고시에서는 제7조(신규면허)제3항에 면허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장
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면허 신청없이 공유수면 매립

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해 그대로 면허 발급한 것은 불법 면허이다.

- ③ 현대에 특혜를 주기위해 공유수면 매립법에도 없는 것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의 대규모 간척사업 규정을 고쳐 현대에 승인해 주고 84. 7. 14. 다시 민간기업 참여를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현대를 위한 정부이고, 현대는 정부위에 군림했던 것 아닌가?

□. 면허증 발급의 불법성

1. 공유수면 매립법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면허의 요건)제1항에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는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립지역내 직접 피해 어업권자 총 1,182호중 511호만 면허발급 이전에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671호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671호는 면허일로부터 5년 4개월후인 84. 12. 21. 합의타결 -

2.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5조(면허의 요건)제2항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는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천혜의 수자원 보고인 천수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4천여세대주민의 생존권을 일시에 몰수하고 일개 재벌 그룹에게 5,000만평의 국토를 분할시켜 준 것이 과연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처사인가?

제1조(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면허 허가이다.

- 면허의 요건에 명시된 매립전과 후의 득실을 정확히 조사해 보고 면허증을 발급했는가?

- 현대에 대한 면허증 발급을 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면허이다.

- 특히 면허 조건에는 유보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조건을 위반한 현대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3. 면허조건 8항 권리자에 대한 보상기한 미준수.

면허조건 8항에 의하면 “권리자에 대하여는 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농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립지역내 직접 피해 어업은 1182세대중 511세대에 대해서만 면허증 발급 이전에 동의를 받고 나머지 671세대에 대해서 면허일로부터 무려 5년 4개월이 지난 '84. 12. 21에 비로소 합의 보상이 타결되었다.

면허조건에 여타 유보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자에 대한 보상동의를 5년이 지나도 타결되지 않았는데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4. 공유수면 매립법 제17조(공사착수의 제한)에 의하면 “보상이나 시설을 한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5. 23. 공사에 착공했다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동법 동조항의 단서 규정에서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보상이 피해 어업권자와 최종 동의를 득한 것은 '82. 12. 21인바, '80. 5. 23 공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이다.

□. 환경보전법상 위법사항

1. 보사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78. 7. 1 시행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약)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면허)제2항 “사전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라는 의무규정에 따른 협의('79. 7. 21)에도 보사부장관은 배제되어 있다”(협조기관 : 건설부, 관세청, 해운항만청, 수산청, 산림청, 충청남도)

2. 대규모 간척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필수요건이 생태학적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

은 것은 위법이다.

- 농수산부의 주장에 의하면 면허 당시 환경보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치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환경보전법에 대한 지나친 축소해석이고 무시이다.

①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0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간척공사” ~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률적 상식밖의 편의적 축소 해석이다.

② 동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 환경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천수만 매립은 명명백백한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③ 동법과 함께 시행된 제4조(환경영향 평가 조서의 작성)에도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 평가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보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서를 작성치 않은 것은 위법이며,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이나 보사부 장관과의 협의없이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위법이다.

④ 현대에 면허증을 발급('79. 8. 24)한 직후인 '79. 12. 28에 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곧이어 시행령 개정('80. 8. 6)하여 “매립 및 개간산업”을 명문화 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때 농수산부가 당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치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현대를 비호하기 위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면허 취소 요건

1. 면허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현대의 A.B지구 간척사업 면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 1979년 8월 24일 농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현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증은 조건부 면허였으며, 16개 항의 면허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면허조건 17항 “관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지시 또는 전 각 항의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면허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① 면허조건 6항 착수계 제출기한 불이행.

- 면허일 : '79. 8. 24

- 실시계획 인가일 : A지구-'80. 3. 13, B지구-'79. 11. 23.

- 착수계 제출일 : '80. 5. 23.

면허조건 6항에 의하면 매립공사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수산부 장관에게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B지구를 기준으로 할때 180일(6개월) A지구를 기준으로 할때 70일로 모두 30일을 초과하여 면허조건 6항을 위반하고 있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22조(면허의 취소)제2호에 의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 면허인 이유)

①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

→ 공익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아니다.

②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면허의 요건)중 제1항(권리자의 동의) 제2항(이익이 손실을 초과)에 모두 위배되는 간척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발급.

③ 환경보전법상 제5조(사전협의)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영향 평가 조서의 작성)에 준해서 보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 발급.

이상과 같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불법면허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22조에 의해 의당 면허 취소되어야 한다.

○ 농지조성과 사무관(보충설명)

- 국장이 충남도에 14회 정도 독촉을 했습.

- 보상이 되도록 길을 텃습.

- 시장.군수가 적극 중재를 해야함.

책임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있다.

-공특법대로 보상해결, 등급(ABC)분류는 현대에서 임의로 했다.

(농수산부 관계 공무원들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느낄수 있었습)

○ 손연복 위원장

- 농수산부에서 도와 줄 일은 관행어업 실어보상에 대한 주민의 청원에 따라 토지의 분배. 선정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해결, 2km이내 어업종사, 60일등 신청과 1,002세대 인정등이 공고후 2년이 경과한 지금 현대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허가권자인 농산부가 적극 개입해결해 달라고 요구

○ 농지조성과 사무관

- 농림수산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 정부에서 할 일이 있다.
- 시장.군수가 적극 중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농림수산부에서도 힘껏 뛰고 있다.
- 길을 열어 놓았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

○ 손연복 위원장

- 공특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현대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보다는 농림수산부에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 농지조성과 사무관

-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도 아니다, 시장.군수가 할 일이 있고 농림수산부에서 할 일이 있다.
- 3개 조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했다.
그중 1개 조항을 수용하고(매립지 내측)2개 조항은(땅분배, 내측공특법상 보상)소송 했다.

○ 손연복 위원장

- 정부가 현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것 아닌가.

○ 농지조성과 사무관

- (어이없다는 인상을 줌)
- 지난번 재판시 서산시 모 사람에게 증인을 서라고 했는데, 피하드라(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
- 6. 22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연기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 공갈을 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다.

- 농림수산부의 권한은 면허 취소권 밖에 없음.
-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분통이 터진다.
- 도지사와 서산시가 더 촉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손연복 위원장
 - 도지사가 권한이 없는데 중재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업무분담 규정
에 의하여 농수산부가 책임이 있다.
- 농지조성과 사무관
 - 왜 권한이 없는가?
- 최은우 위원
 - 6월 22일까지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지조성과 사무관
 - 계속 이행이 안될시 마지막에는 18개 조항을 이행않았으니,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
 - B지구에 대해서도 농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성되지 않았으며,
 -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11개월 남았다.
- 농지조성과 사무관
 -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해라.
보상대상자 중에서 아닌 사람은 가려주고 더 있으면 넣어주고 해서 적극 중재토
록 해라
- 손연복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도와 주십시오.

3. 충청남도지사 방문결과

- 지난 '93. 6.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의결에 따라 도지사(이동우)를 방문
하였으나
- 도지사의 부재로 부지사(박찬무) 방문
→ 지사 부재이유 : 교육

가. 방문일자 : '93. 6. 8. 14:00~16:00

나. 장 소 : 부지사실

다. 참석인원 : 7명

- 시의회측 : 2명(손연복, 윤찬구)
- 도 의 원 : 2명(이복구, 박동윤)
- 도 측 : 3명(부지사 박찬무, 농림국장 박종순, 수산과장)

→ 수 행 : 의사계장

라. 대화요약

- 위원장 손연복 :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원회일행을 맞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들이 지사를 방문하게 된것은 사전에 절달된것처럼 서산 천수만 A.B지구의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지사가 조치한 사항을 알아보고 현지 어민들의 결집된 의견과 시의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 부지사 박찬무 : 방문을 환영한다.
지사가 신경계 활성화 중앙교육을 받기위하여 부재중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이하 경미한 내용 생략)
- 위원장 손연복 : 지난 '91년 12월 27일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에 협의결과 신 부지사가 현대, 그리고 해당 농림수산국장, 시장, 군수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한 이후 지금까지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안다.
현대와 4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부지사 박찬무 : 그간의 자세한 경과사항을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다.
- 수산과장 : 매립면허과정부터 설명
(설명내용 생략)
(수산과장 설명도중 손연복 위원장이 발언중지를 요구하고 관행어업 실어보상에 대한 이어비산출 근거와 매립면허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 되었길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의회에 청원까지 되었다면 직무와 연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보는데 도지사의 대책이 어떤지 설명하라고 요구)
- 농림국장 박종순 : 수산과장의 설명에 보충설명

(설명내용 생략)

(손연복위원장이 설명중지요구로 설명중단)

(서로 고성인 오감)

→ 농림국장 자리뜸 : 도의회 회기중으로

- 위원장 손연복 : 수산과장의 설명이나 농림국장의 설명은 현대에서 주장하는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녹음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 농림수산부장은 허가권자이지만 충청남도지사는 어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기때문에 관행 어업실어보상 본부장이 아닌가?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직무를 유기한점이 많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 위원장 손연복 : 도청 관계자의 설명은 실어보상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현대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그동안 어민보상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수산과장 : 현대에 13차례, 해당시장 군수에게 11차례, 그리고 농림수산부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촉구하거나 현실정을 보고하였다.

- 부지사 박찬무 : 수산과장의 설명자료를 특위에 제시하라.

- 도의원 이복구 : 수산과장이 설명한 자료를 복사하여 제시해라(어민동향 발언 : 생략)

- 위원장 손연복 : 이복구 도의원 발언에 재촉구

- 위원장 손연복 : 어민들은, 그리고 읍면동장은 현대와 4개시장, 군수의 공고에 의하여 해야할일은 다했다.

남은길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뿐이다.

어장관리자로서 본부장인 부지사와 도지사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93. 6. 22일의 준공시한이 임박했다.

현대, 농림수산부로 지사의 강력한 뜻을 공문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 부지사 박찬무 : 어민도 도민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6월 15일 이전에 현대측을 불러 대책을 따져보는 회의를 갖겠다.

그리고 서산시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

- 간사 윤찬구 : 6월 15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서산시.군민.태안군민의 보상촉구 결의대회가 있다.

그전에 현대측을 불러 확실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으면 한다.

- 부지사 박찬무 : 알았다. 가능한 6월 12일전에 현대측과 해당 시장,군수등과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당부한다.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을 위하여 공동대처하자.

- 위원장 손연복 : 장시간 감사드린다.

(종료시간 15:55분)